【 임상의학교육 소위원회 시행세칙 】

[신설 2019년 3월 26일]
[개정 2021년 8월 31일]

① **(목적)** 이 시행세칙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규정 11장에 명시된 교육과정 소위원회로 설치된 임상교육 소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위원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통합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하는데 있다.

② **(적용범위)**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타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③ **(설치와 구성)**

1.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임명한다.
2. 당연직은 의학과장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.
3. 선출직 위원은 의과대학 교원 중에서 의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4. 학생위원으로 의과대학 의학과 3학년 대표, 4학년 대표를 둔다.

[개정 2021년 8월 31일]

④ **(위원장)** 위원장은 학장이 임명한다.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⑤ **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임상의학교육과정 연구개발
2. 임상의학교육과정 설정 및 개편
3. 임상의학교육과정의 평가 및 의뢰
4. 수업계획서 검토 및 개편
5. 기타 임상의학교육 업무에 관하여 학장이 요청한 사항

⑥ **(회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**(자료제출)**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교실 또는 대학에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⑧ **(간사)**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

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, 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 위원장 유고 시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⑨ **(기록보관)**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얻은 후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.